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높은위험]

메리츠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메리츠e-일등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리츠e-일등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메리츠e-일등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펀드코드: 57627)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메리츠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 판매회사의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3. 3. 29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3. 4. 4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인터넷 전용펀드로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사 홈페이지에 내용 게시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 이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및 예비포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목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4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4
3. 모집예정금액	4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4
5. 인수에 관한 사항	4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4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5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5
4. 집합투자업자	6
5. 운용전문인력	6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6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6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7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9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3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5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6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7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21
1. 재무정보	21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22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22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25
1. 집합투자업자의 관한 사항	25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26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27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9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9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1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31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34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35

[참고] 펀드용어정리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메리츠e-일등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5762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증권)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증권)

마. 특수형태 : 해당사항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2)모집장소 : 판매회사의 온라인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모집(판매)방법 및 절차 :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판매회사의 온라인을 통하여 모집(판매)합니다.

주1) 모집(판매)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메리츠e-일등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5762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06.6.19	최초설정
2007. 8.29	회사명 및 펀드명칭 변경 (한불종합금융->메리츠종합금융)
2008.7.25	영업양수도에 의한 집합투자자 변경(메리츠종합금융→메리츠자산운용)
2008.10.23	증권펀드 세제혜택 추진에 따라 변경
2009. 5.4	- 규약 변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적용으로 변경) - 투자신탁명 변경 : 메리츠e-일등기업주식형투자신탁 → 메리츠e-일등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
2010. 1.27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규약변경 (세법 개정에 따른 변경/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2010. 5.19	- 비교지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내부 비교지수 선정 기준의 변경) - 결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재무재표 업데이트
2010. 10.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제93조 및 제223조) - 결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재무재표 업데이트 - 모집방법의 명확화(온라인 전용펀드)
2011.3.30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1.8.2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
2012.9.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4항 개정사항 반영
2013. 4. 4.	- 운용전문인력 변경 등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메리츠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 메리츠화재빌딩 8층 (대표전화 : 02-6320-30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용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 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안정민	1979	책임운 용역	7개	823억원	- 메리츠자산운용 주식운용팀 - 하나대투증권 선물옵션부
김보현	1973	부책임 운용역	3개	1,083억원	- 메리츠자산운용 주식운용팀 -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주식운용팀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
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없음.

②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비고
투신운용팀	2006.06.19-2008.07.30	-
채홍국	2008.07.31-2011.01.19	-
주식운용팀	2011.01.20-현재	2011.3.30~ 2013.4.3 책임운용역: 최영호 /부책임운용역: 안정민
		2013.4.4 ~ 현재 책임운용역: 안정민 /부책임운용역: 김보현

주1) 작성기준일기준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업종 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일등기업 주식에 장기 투자함으로써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수익률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인터넷 판매 전용 펀드로써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와 비교했을 때 획기적으로 적은 수수료로 상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기투자자의 수익극대화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비교지수 = KOSPI*100%

※ 상기 비교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①	국내주식	60% 이상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회사·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
②	채무증권	40% 이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이하 같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을 제외한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신용등급이 A3-이상인 것.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주식관련사채)	(40% 이하)	
	(기업어음)	(40% 이하)	
③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이하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과 유사한 시장으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것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⑤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⑥	집합투자증권등	5%이하 (단, ETF에의 투자는 30%까지 가능)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⑦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⑧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이하	
⑨	증권의 차입	①~③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⑩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⑪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2. 금융기관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내지 ③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내지 ③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 제외
<p style="text-align: center;">동일종목 투자</p>	<p>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들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간주</p> <p>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 기업어음증권"이라한다) 및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파생결합증권 /금융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판매회사,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금융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판매회사,증권금융회사)이 발행한 채권/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판매회사, 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사채권 또는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판매회사,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등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p>	<p style="text-align: center;">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p style="text-align: center;">동일법인 등이 발행</p>	<p>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한 지분증권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법 제84조제4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파생상품 매매 또는 투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개요

-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채권, 파생상품, 수익증권등, 기업어음등, 유동성자산에 분산투자 하는 주식형집합투자증권으로서 주로 주식투자를 통한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펀드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용합니다.

2) 주요투자전략

- 집합투자자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종목들을 이 투자신탁자산으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이때 아래에 나열한 지표중 하나이상 충족시 일등기업주식으로 정의됩니다. 다만, 주식의 편입시점에는 일등기업주식이었으나, 이후 일등기업주식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 기매입된 주식은 일등기업주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일등기업 주식

- 업종 내 시장점유율, 시가총액, 업종 내 경쟁력, 브랜드를 고려하여 일등기업 선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분류기준을 기초로 하여 신성장 세부업종은 별도업종으로 분리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업종특성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이용
- 다른 기업의 진입이 불가능한 진입장벽(기술, 규모, 가격 등)을 보유한 기업
- 일등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할 능력을 갖춘 기업
- 상기 항목 해당기업이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일등기업이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기업

국내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 ▶ 시가총액이나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기업
- ▶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군에 속한 업종 대표 기업

업황호전이 예상되는 종목

- ▶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기업
- ▶ 15% 이상의 ROE^{주1)}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기업
- ▶ 절대주가가 저평가 되어있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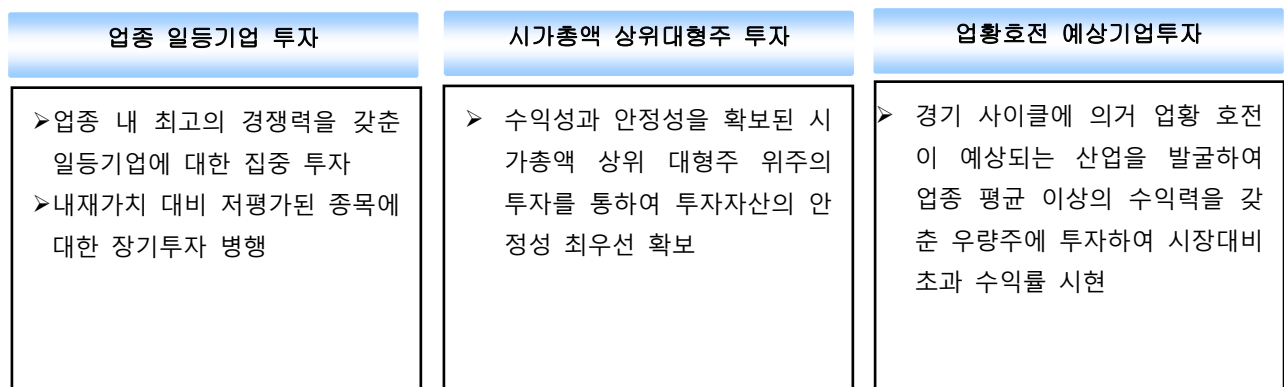
주1) ROE (자기자본이익률, Return On Equity) : 자기자본에 대한 기간이익의 비율을 말하며 자기자본이익률은 주주지분에 대한 운용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재무관리와 증권분석에서 중시되는 지표입니다.

3) 자산운용의 기본방침

- 기본에 충실한 운용
- 철저하고 과학적인 종목분석으로 투자대상종목 풀 구성
- 펀드매니저의 장세판단에 의한 자산배분전략에 따라 적극적 운용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 업종 일등기업 및 Bottom up 분석^{주1)}을 통한 저평가 우량종목 선정 및 거시경제/산업경기의 Top Down 분석^{주2)}을 통해 최적의 자산배분 전략구사



주1) Bottom-up(상향분석)방식 : 기업분석→ 산업분석→ 거시경제 분석하는 방식

주2) Top-Down(하향분석)방식 : 거시경제 분석→ 산업분석→ 기업분석처럼 분석범위를 좁혀 나가는 방법.

즉, 경제흐름을 파악하고 유망업종을 선택하여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4) 위험관리 : 피드백(사전적리스크->리스크모니터링->사후적 리스크관리)을 통한 리스크에 대한 사전 통제력을 강화하여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시행합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펀드재산의 60%이상을 주권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주된 투자대상인 주식 가격의 변동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예금을 판매하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상장주식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적극적 매매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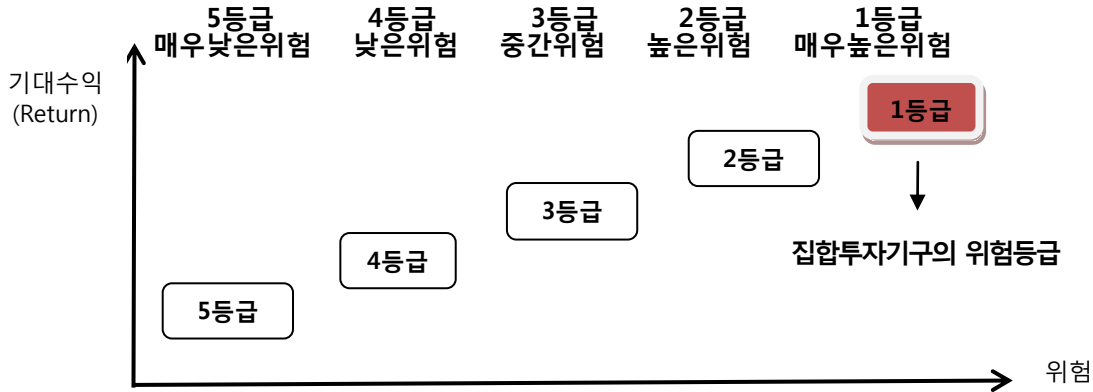
다. 기타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에 따른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환매제한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집합투자기구는 60% 이상~최대 100%까지 주식 등에 투자하여 채권 등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큼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매우 높은 위험등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며, 투자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과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투자위험등급분류 기준표 (시행일 : 2009. 7. 2)

위험 등급	분류기준	해당 집합투자기구
1등급	매우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최저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원금 비보존추구 파생상품에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에 주로 투자하며, 보증 또는 담보가 없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30%초과 60%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투자전략상 실제 고위험자산 투자비율이 30%초과 60%미만인 경우 포함) - 원금 비보존추구 파생상품에 30%초과 60%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원금 50%이상 보존추구형)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최대 30%이하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차익거래포함) (투자전략상 실제 고위험자산 투자비율이 30%이하인 경우 포함) - 일반적 보증이나 담보권 확보하는 집합투자기구 - 저위험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원금보존 추구형)
4등급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적격 신용등급이상 회사 보증 또는 담보권 확보로 원금보존추구형 집합투자기구 - 저위험자산 중 신용등급 A급 이상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은위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메리츠자산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 (2009.7.2) : 상기기준표 개정, 시행함

- 개정사유 : 기존 증권투자신탁에 한정된 분류기준을 부동산 및 특별자산까지 범위를 늘리고자 함

- (주)1.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메리츠자산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①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후순위채권, 투기등급채권(BB+이하), 투기등급CP (B+이하), 상품(commodity), 리츠, 지분(유한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대출 및 대출채권, 이러한 고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② 저위험자산이란 투자적격등급 채권(BBB급-이상), CP(A3-이상), 투자적격등급이상인 회사가 보증 또는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이러한 저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3. 편입비용, 최대손실가능비용 등은 집합투자계약,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등을 기초로 하되, 실제 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를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는 1등급씩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채권의 경우 해당국가의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5. 모자형구조의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6.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7.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8. 상기 분류에 따른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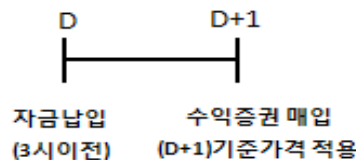
가. 매입

(1) 매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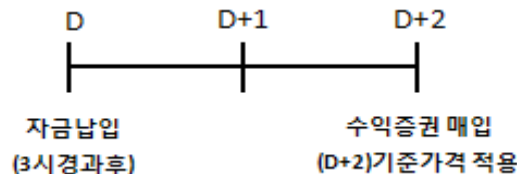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온라인을 통한 매입이 가능합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단,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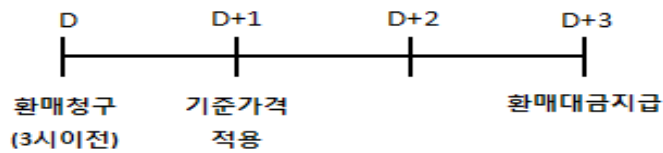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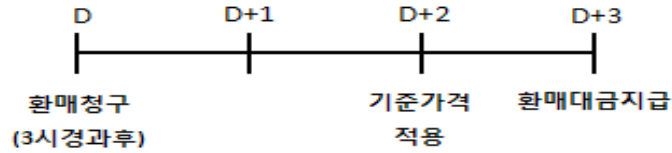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온라인을 통해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이 지급



(3)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시 취소 또는 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4)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 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5) 환매수수료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이 투자신탁에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환매수수료는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을 위한 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투자자의 환매금액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투자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

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또는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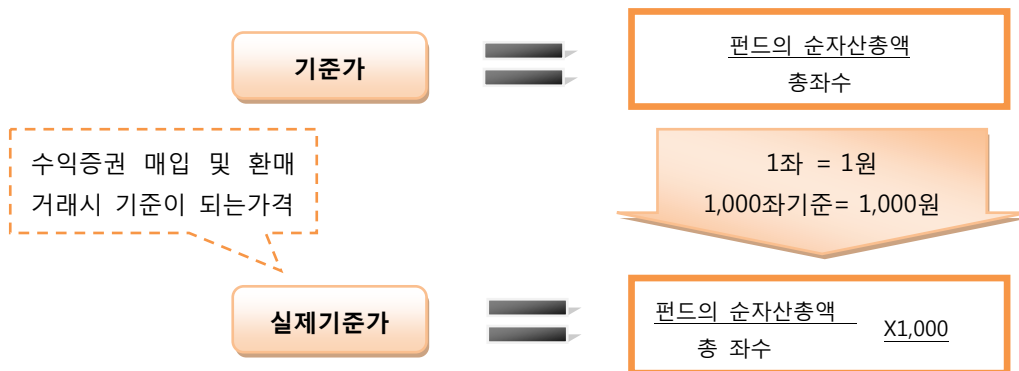
다. 전환 : 전환형집합투자기구가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 · 판매회사 ·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주1)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③-①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집합투자기구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지급시기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부과비율 (연간,%)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보수	0.2500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2500	
신탁업자 보수	0.0250	
일반사무관리 보수	0.0190	
기타비용	0.0135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0.5575	
증권거래비용	0.6767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1.06.19 ~ 2012.06.18]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1.06.19 ~ 2012.06.18] 또한, 증권거래비용은 주식매매수수료, 채권매매수수료, 국내 Call loan중개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천원)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57	179	312	700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또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한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집합투자기구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 (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2%)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장기적립식 투자자 소득공제 및 세제혜택 - 2009.12.31 까지의 가입자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①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적립식 투자를 3년이상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나)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②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④ 소득공제 비율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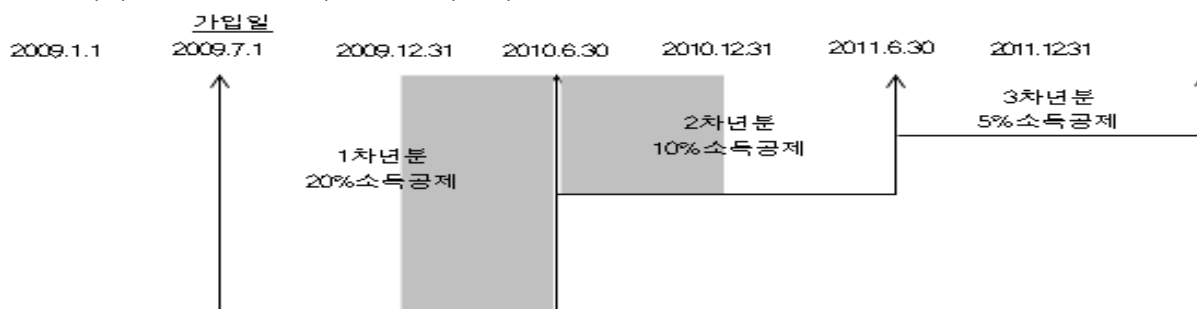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⑤ 소득공제 사례

투자자 A가 2009. 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 상기 적립식 주식집합투자기구의 세제우대는 2008년 10월 20일 확인된 사항 이며 향후 동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세제우대에 대한 설명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의 일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4) 기준가는 일반기준가와 과표기준가가 있으며, 이들 가격은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meritzam.com)·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일반기준가란,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과 채권 등의 모든 자산을 그날의 시가 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채권의 이자와 주식의 배당금 등의 수입을 추가하여 자산총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에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차감하여 순자산총액을 산출하고, 그 날의 수익증권(또는 주권)의 총좌수로 나누어 기준가격이 산출됩니다.

과표기준가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수익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등은 과세대상 수익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표산정을 위해 산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즉 거래는 기준가격으로 하고 과세는 과표기준가격으로 합니다.

(5) 투자자에 대한 과세 사례(예시)

(단위:원)

거래일자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거래구분	좌수	입출금금액
연초	1,000	1,000	입금	10,000,000좌	10,000,000
연말	1,300	1,200	출금	10,000,000좌	13,000,000

신탁재산이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투자이익의 구성이 아래와 같은 경우, 그 그 속자가 법인 또는 개인(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를 가정)인 경우 각각의 투자신탁의 소득·원천징수세액·결정세액·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이자·배당	매매·평가이익
채권	1,000,000	△1,000,000
주식	2,000,000	1,000,000

① 투자이익과 투자신탁이익은 각각 3,000,000원과 2,000,000원입니다.

②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대상소득=투자신탁이익(개인·법인동일)→ 2,000,000원

- 원천징수세액 = 2,000,000*14% =280,000

③ 결정세액(납세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액) 및 납부세액의 계산 : 개인과 법인의 경우

(단위:원)

구분	개인	법인
결정세액	투자신탁이익 x 누진세율(T) =2,000,000 x T	투자이익 x 법인세율(t) =3,000,000 x t
납부세액	결정세액-원천징수세액 =2,000,000 x T - 280,000	결정세액-원천징수세액 =3,000,000 x t - 280,000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6기(2011.06.19 - 2012.06.18)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5기(2010.06.19 - 2011.06.18)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4기(2009.06.19 - 2010.06.18)	삼일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6기	제 5기	제 4기
	(2012.06.18)	(2011.06.18)	(2010.06.18)
운용자산	5,548,931,232	16,822,727,632	29,337,004,394
증권	5,410,385,500	16,785,929,297	29,305,762,315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38,545,732	36,798,335	31,242,079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4,087,526	105,612,414	1,687,113,541
자산총계	5,583,018,758	16,928,340,046	31,024,117,935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51,242,320	35,102,241	1,245,648,806
부채총계	51,242,320	35,102,241	1,245,648,806
원본	6,610,232,385	14,019,152,520	26,987,242,756
수익조정금	-106,195,900	-2,382,070,069	-87,795,579
이익잉여금	-972,260,047	5,256,155,354	2,879,021,952
자본총계	5,531,776,438	16,893,237,805	29,778,469,129

(단위: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6기	제 5기	제 4기
	(2011.06.19 - 2012.06.18)	(2010.06.19 - 2011.06.18)	(2009.06.19 - 2010.06.18)
운용수익	-936,480,353	5,392,813,362	7,477,320,542
이자수익	15,931,551	25,936,523	18,421,572
배당수익	65,354,960	295,882,805	311,121,986
매매/평가차익(손)	-1,017,766,864	5,070,994,034	7,147,776,984
기타수익	1,279,051	5,983,478	6,325,025
운용비용	34,897,656	136,350,445	142,147,760

관련회사 보수	34,897,656	136,350,445	142,147,76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2,161,089	6,291,041	6,267,435
당기순이익	-972,260,047	5,256,155,354	7,335,230,372
매매회전율	442.20	352.90	382.65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06.19 - 2012.06.18	140	140	49	47	123	122	66	55
2010.06.19 - 2011.06.18	270	270	507	558	637	712	140	169
2009.06.19 - 2010.06.18	276	231	42	43	49	49	270	298

주1)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에 이익분배에 따른 재투자분이 포함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세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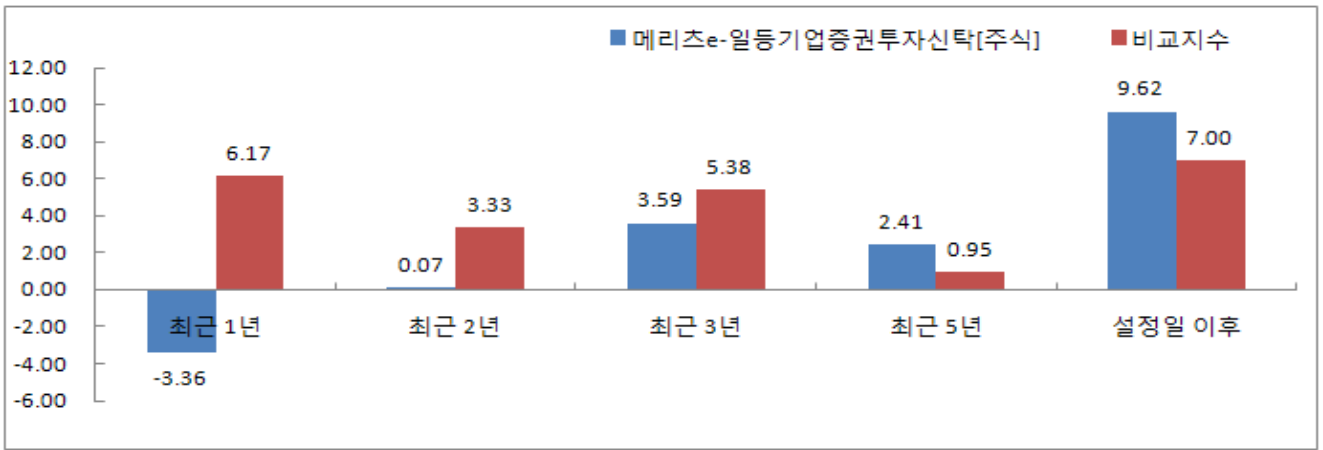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1.09.11 ~12.09.10	10.09.11 ~12.09.10	09.09.11 ~12.09.10	07.09.11 ~12.09.10	06.06.19 ~12.09.10
메리츠 e-일등기업증권 투자신탁[주식]	-3.36	0.07	3.59	2.41	9.62
비교지수	6.17	3.33	5.38	0.95	7.00

주1)비교지수 : KOSPI*100%

주2)연평균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은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연평균수익률정보는 신고서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과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1.09.11 ~12.09.10	10.09.11 ~11.09.10	09.09.11 ~10.09.10	08.09.11 ~09.09.10
메리츠 e-일등기업증권 투자신탁(주식)	-3.36	3.63	10.99	22.43	-17.24
비교지수	6.17	0.57	9.60	12.27	-20.20

주1) 비교지수 : KOSPI*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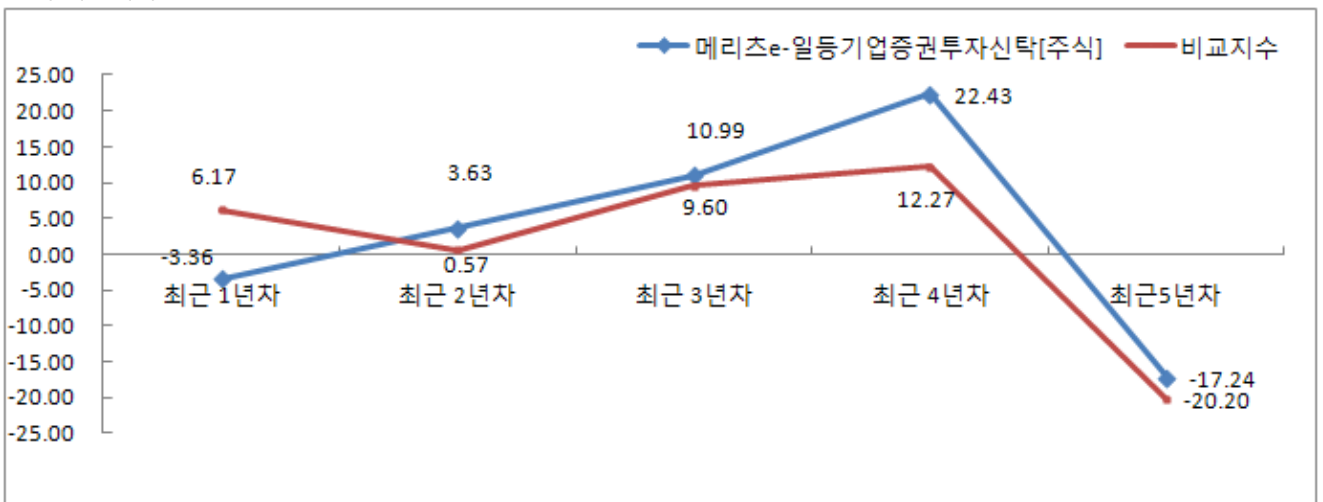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 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 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12.6.18기준, 억원,%)

통화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	기타	자산총액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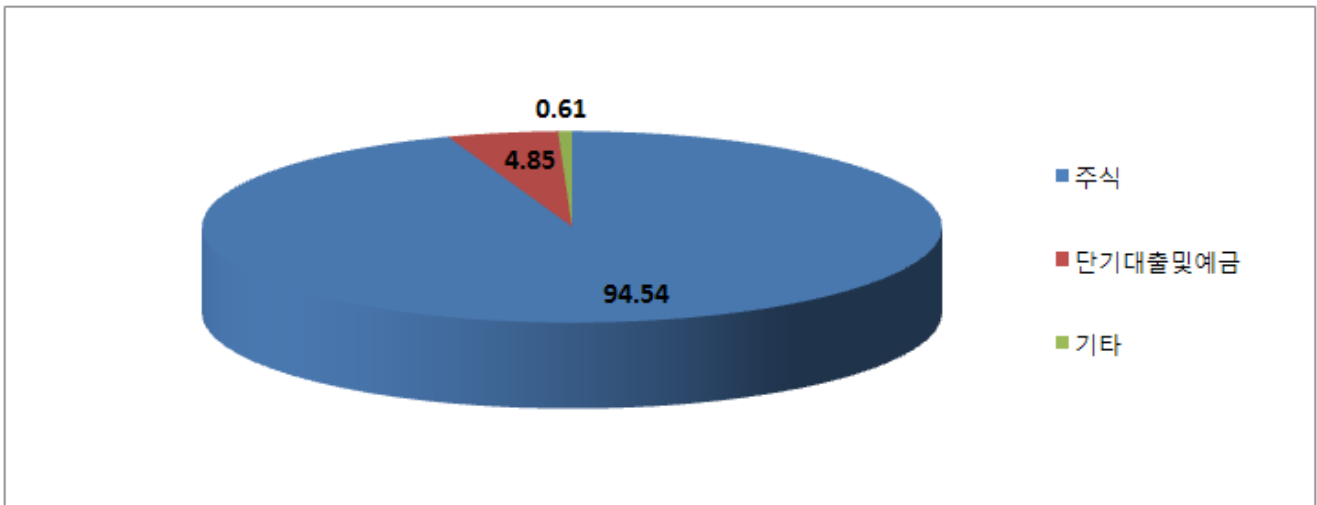
별 구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 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출 및 예금		
KRW	53	0	0	0	0	0	0	0	0	3	0	56
	(94.5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85)	(0.61)	(100.00)
합계	53	0	0	0	0	0	0	0	0	3	0	56
	(94.5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85)	(0.61)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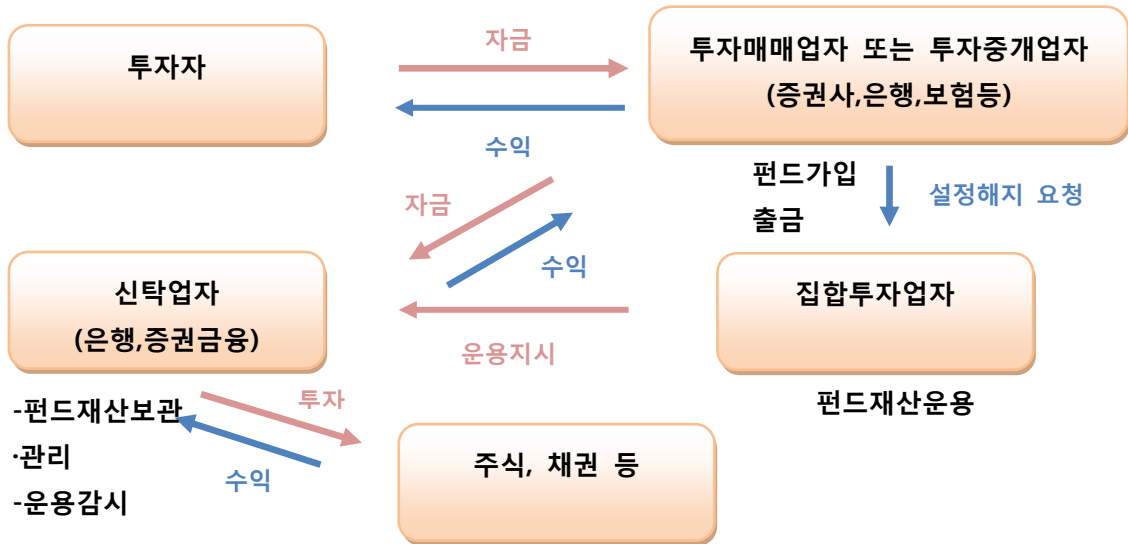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투자자 및 집합투자기구간의 관계



1. 집합투자업자의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메리츠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 TEL)6320-3000 http://www.meritzam.com/
회사연혁	2008.5. 6 회사설립 2008.7.11 자산운용업 본허가 2009.2.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인가 2010.3.11 자본금 50억원 증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자본금	150억원
주요주주현황	메리츠금융지주 100%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

(2) 선관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구 분	제 4 기	제 3 기말	구 분	(단위:백만원)	
	2012. 3. 31	2011. 3. 31		2011.04.01-	2010.04.01-
				2012.03.31	2011.03.31
자산총계	13,155	12,880	영업수익	7,272	5,942
- 현금및예치금	9,131	8,435	-자산관리수수료	3,086	2,277
- 유가증권	498	498	-집합투자기구	3,876	3,372
- 유형자산	214	385	운용보수		
- 기타자산	3,314	3,561	-이자수익 등	314	294
•미수수익	1,376	1,173	영업비용	7,020	5,939
•무형자산	1,544	444	-임직원급여	4,633	3,928
•기 타	392	1,944	-복리후생비	639	441
부채총계	994	638	-건물임차료	393	368
•예수부채등	994	638	-전산운영비	297	235
자본총계	12,161	12,241	-기타제비용	1,058	966
- 자본금	15,000	15,000	영업이익	252	4
- 자본조정	-74	-74	영업외손익	-222	15
- 이익 잉여금	-2,766	-2,685			
당기순이익	30	19	당기순이익	30	19

* 상기 요약 재무제표는 제4기는 K-IFRS, 제3기는 K-GAAP 기준으로 작성됨.

라. 운용자산규모

(단위: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부동 산파생	특별자산 및특별자 산파생	혼합자산 및혼합자 산파생	단기금 용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 접형	파생형	기 타					
수탁고	816	5,149	1,861	0	14	8,676	0	1,013	2,738	0	9,725	29,992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신탁업자 : 해당사항없음

나. 기타 업무의 신탁업자 : 해당사항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신탁업자

(1)회사개요

회 사 명	(주)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 가 101-1 ☎ 1588-1111 http://www.hanabank.com
회사연혁	1991.7. 설립 1999.1. 통합 '하나은행' 출범 (충청은행/보람은행 합병) 2000.2 Allianz AG 전략적 제휴 체결 2002.12. 서울은행과 합병. 통합 '하나은행' 출범

(2)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의무와 책임

<의무>

-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

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 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 ①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 4층 ☎ 02) 2168 - 0400 http://www.shinhanaitas.com
회사연혁	2000. 6 법인설립 2008. 5 신한은행 자회사로 편입

(2)주요 업무

①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나이스채권평가	KIS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T.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T.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T.02-3215-1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nicepricing.co.kr	www.bond.co.kr

(2)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구성과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법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의 (3) 내지 (4)의 사유로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이내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류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인 매매회전율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에 해당하는 투자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④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
 - 투자신탁의 명칭
 - 투자대상자산(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함)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수익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사항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산별 취득한도, 취득한도 초과시 해소방법 및 해소기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⑤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설명서의 변경(법 및 이의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른 변경,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그 밖에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3.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내용
<투자증권거래>	<p>①선정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p>②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p>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p> <p>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p> <p>다. 마케팅비용</p> <p>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p> <p>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p> <p>③선정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용담당자는 상기 원칙에 의하여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을 세워야 함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은 준법감시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운용담당자는 매매담당자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지정할 수 없음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동일함

주1)매매대가 이익 :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어정리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배당소득	펀드운용시 증권(주식·채권 등)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또는 총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판매 및 관리 등 집합투자증권 매입, 환매 및 투자기간 중 지속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고객의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성과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며,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이득	펀드운용시 증권(주식·채권 등)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을 말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메리츠 e-일등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판매직원 성명: 서명)**-----**(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메리츠 e-일등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들었고 권유받았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